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3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김용만・이정문・조승래

이인영 · 염태영 · 이훈기

최민희 • 강준현 • 이강일

김용민 · 이기헌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도 통보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제한적임.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및 공고) ① 행정소송에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한 때에는 해당 판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대법원에 통보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청은 명령·규칙에 대한 개정 계획 등 해당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6條(命令・規則의 違憲判決등 公告) ① 行政訴訟에 대한 大 法院判決에 의하여 命令・規則 이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된다 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大法 院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 체없이 이를 官報에 게재하여 야 한다.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및 공고) ① 행정소송에 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 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확정 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 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반된다는 판결을 한 때에는 해
 당 판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대법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청은 명령·규칙에 대한 개정 계획 등 해당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

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